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문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I 개정된 주요 위험물안전관리법

■ 신구조문대비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전)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후) [시행 2017.6.22.] [법률 제14752호, 2017.3.21., 일부개정]
<신 설>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2.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3. ~ 9. (생략)		제35조(벌칙) - -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3. ~ 9.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5. (생략)		제36조(벌칙) - - - - - - - - - - 1천500만원 - - - - - - . 1.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제37조(벌칙) - - - - - - - - - - 1천만원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전·후 주요 처벌기준

	개정 전 [시행 2017.3.28.]	→	개정 후 [시행 2017.6.22.]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법 제34조의2)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법 제34조의3)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 위반 (법 제36조)	5백만원 이하 벌금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 (법 제36조)	5백만원 이하 벌금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 (법 제36조)	5백만원 이하 벌금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 (법 제37조)	3백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법 제37조)	3백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동 작 소 방 서